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 납입〉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714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3
1.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 납입	3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2일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영향까지 겹치며, 농수축산업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농수축산업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 및 대비하고 재해를 복구하는 등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안정과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안 제19조제5항).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 납입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기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5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 ④ (생 략)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 ----- ----- ----- -----수산발전기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3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9조에 의거하여¹⁾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신설하면서 재원 구성에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농어업 재해관리에 사용할 재원을 확보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재정적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기금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있음.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²⁾

그러나, 필요한 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1)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4. (생략)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마련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어 재원의 출처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려는 취지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표] 참고 법률안

법안명	발의자	주요 내용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11)	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업 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함.
「농어업재해대책 기금법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13)	① 재해의 예방·대비·복구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함. ② 정부출연금, 장기차입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함.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④ 기금은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의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의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생계 안정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15)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3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를 위한 전입의 용도에 사용되도록 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현행법에 따라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1조에 따른³⁾ 해양환경 복원·보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경우에는 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지원을 설치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사용 용도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⁴⁾, 기금 신설은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부담금의 징수액은 연간 3.7억 원 수준인데, 부담금이 납입되는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해양환경개선 사업’에 집행하는 예산이 연간 450억 원 규모⁵⁾로 해당 용도에 전부 사용되어도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부담금의 징수 규모가 크지 않음.

3) 「해양환경관리법」

제21조(부담금의 용도)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 3.~9. (생략)

4)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기획재정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5) ('20) 340억원, ('21) 517억원, ('22) 454억원, ('23) 495억원 (출처: 해양수산부)

[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수산발전기금 납부액
2020	224	224
2021	363	363
2022	558	558
2023	353	353
2024.6월까지	96	96

마지막으로,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가로 100% 귀속되는 하나의 부담금이 두 개 이상의 기금이나 회계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첨부1 참고).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부담금의 사용 용도 고려 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관계부처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18

첨부 1

하나의 부담금이 복수의 기금이나 회계로 사용되는 경우

구분		귀속비율(%) [*]	근거 법령
재건축 부담금		100	
국가	주택도시기금	50	재건축이익환수법 제4조
광역자치단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30	
기초자치단체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	20	
개발 부담금		100	
국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50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00	
국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0	광역교통법 제11조의6
광역자치단체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0	
과밀 부담금		100	
국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광역자치단체(서울)	균형발전특별회계	25	
	도시재생특별회계	25	